

제285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95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
지원 조례 제정(안) 검토보고서**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제정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95 호
- 제 출 자 : 정해숙 의원 외 12인
- 제 출 일 : 2021. 10. 7.
- 회 부 일 : 2021. 10. 8.

2. 제안이유

청소년이 “심리적 외상(Trauma)”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(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치료사업, 지원협의회 운영 등)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
- 안 제2조(정의) : 심리적외상(Trauma)¹⁾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(PTSD)²⁾, “사회적심리 외상³⁾”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,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안 제5조)

1) 충격적 사건(생명을 위협하는 사고·재해·전쟁, 도파·회피가 불가능한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학대 및 폭력, 자살, 고문, 테러 등)의 경험 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
2) 공황장애, 불안장애, 이인증(depersionalization,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신과 분리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지각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며, 인격상실, 신체감각 상실,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), 사회공포증, 분노조절장애, 강박증, 조울증, 불면증, 해리장애(정상적으로 통합되어 야 하는 성격요소(의식, 기억, 정체감, 지각 등)들이 붕괴되는 장애), 과각성(과민반응) 충동장애, 우울증, 수면장애, 두통, 어지러움증, 범불안장애, 사회공포증 등
3) 개인, 가족, 학교,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·신체를 위협하는 사건, 심한 부상, 성폭력,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, 무력감,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

- 라. 지원협의회의 운영(안 제6조)
- 마.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바.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- 시.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5조 및 제9조, 제9조의2, 제12조, 제13조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2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관계 행정기관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“청소년단체”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, 조직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상담과 전화 설치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상담 및 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5. 검토의견

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한국청소년 위기실태 조사⁴⁾에 따르면 정신건강 위험군은 총 77만명이며 전국 위기취약 청소년 9만여 명 중 서울시에 4.4%(3,990여 명, 2016년)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서울시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평상시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,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을 경험하였으며, 15.8%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며, 5.4%는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에는 “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

4) 전국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8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

은 법 제3조(정의)에 의하면 “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의 청소년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